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592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3. 7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피고 C은 원고에게 6,650,000원 및 2023. 8. 7.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50,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(다만,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은 주문과 같이 감축하고, 주문 제2항의 연체차임 6,650,000원은 2023. 2. 6.부터 2023. 8. 6.까지 계산한 것임)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임창현

별지